

# 대학시설관리협의회

## 중대재해처벌법 및 주요 인사노무이슈



**장재훈** 노무사

# 강사 프로필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

**공인노무사 (1999年 / 23年)**

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/경영학 **수**

연세대학교 경제학(기업경제) **碩士**

현] 서울서부지방법원 노동사건 전문조정위원

현]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

현] 대법원 노동파트 전문심리위원

현]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자문 노무사

현] 연세대학교(원)/ 한양대의료원(서울, 구리) 자문 노무사

현] 백석대학교, 백석문화대, 백석예술대, 백석대학원 총괄 자문

현] 순천향대학교/ 나사렛대학교 자문 노무사

현] 남서울대학교/ 상명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자문 노무사

현] 선문대학교/ 호서대학교/ 중원대학교/ 농협대학교 자문 노무사

현] 한국콜마홀딩스/ (주)KB캐피탈/ (주)풍산/ 外150여개 기업 노무 고문

# 중대재해처벌법



## 적용범위

**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**

※단, 아래 사업장은 유예기간 적용 (2024.01.27부터 적용)

- ① 개인사업자
- ② 상시 근로자가 **50명 미만**인 사업
- ③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**50억원 미만**의 공사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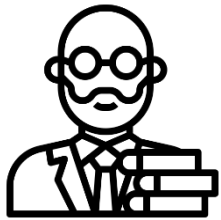
시행일: 2022. 1. 27



## 상시 근로자의 산입 범위 - 모든 근로자



대학교



교원



직원



조교



아르바이트  
일용직



파견 및 도급

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붙임5 교육기관 산업재해 통계 조사('21. 상반기)

기관	직종 구분	현업 근로자 수	이상 온도 접촉	넘어짐	절단, 베임	물체에 맞음	물체에 부딪힘	근골 격계 질환	기 타	소 계
국립 대학 (38교) ※ 부설 학교 포함	조리	716	2	2	-	-	-	-	-	4
	시설	626	-	1	1	-	-	-	1	3
	경비·통학보조	551	-	-	-	-	-	-	-	-
	<b>청소</b>	<b>2,355</b>	<b>2</b>	<b>9</b>	<b>1</b>	-	-	<b>1</b>	<b>2</b>	<b>15</b>
	그 외	148	-	-	-	-	-	-	1	1
	합계	4,396	4	12	2	0	0	1	4	23

출처-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

##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



“중대재해”란 “중대산업재해”와 “중대시민재해”를 말한다.

“중대산업재해”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

① 사망자가 1명 이상

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 
2명 이상

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\*가 1년 이내  
3명 이상

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

##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비교

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	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
<p>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</p> <p>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</p> <p>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</p>	<p>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</p> <p>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</p> <p>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</p>

**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** ⊂ **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**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

##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비교

중대재해처벌법상  
중대산업재해



산업안전보건법상  
중대재해

		중대재해처벌법	산업안전보건법
책임주체	자연인	○ (경영책임자 등)	○ (안전보건관리 책임자) !!
	법인	○	○
처벌내용	자연인	사망	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
		안전보건조치 위반	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	법인	사망	50억원 이하 벌금
		부상 또는 질병	10억원 이하 벌금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중대산업재해

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 
**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**하여

산업재해로 인해 **사망자가 1명 이상** 발생한 경우

**1년 이상의 징역**  
또는  
**10억원 이하의 벌금**

사망 원인은  
시행령의 **직업성 질병**으로  
**한정되지 않음**

처벌 대상: **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행위자**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(21.12.27)



② 직장 내 괴롭힘<sup>66</sup>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,

※ 대검찰청-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 발췌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의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



③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,

※ 대검찰청-중대재해처벌법 별칙 해설 발취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중대산업재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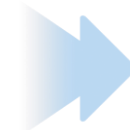
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

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,

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

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


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
1억원 이하의 벌금

처벌 대상: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행위자

## 중대산업재해로 판단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

### 총 24가지

- 별표 1의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(13가지)
-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▪ 스티븐스존슨 증후군
- B형, C형 간염, 매독, 후천성면역결핍증
- 탄저, 단독, 브루셀라증 ▪ 레지오넬라증
- 압착증, 중추신경계 산소중독, 감압병, 공기색전증
- 산소결핍증 ▪ 급성 방사선증, 무형성 빈혈
- 독성 간염(급성) ▪ 렘토스피라증 ▪ 열사병!!!!

뇌심혈관계 질환

직업성 암, 우울증

근골격계 질병



중대재해처벌법상

직업성 질병에서 제외

##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설명자료 Q&A



①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하여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,<sup>65)</sup>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 내재한 유해·위험요인이 원인이 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, 이에 따라 중대 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. 다만, 그 발생원인이 과중한 업무 이외에도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,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업무량, 강도 등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의 변화와 질병의 발생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.

※ 대검찰청-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 발췌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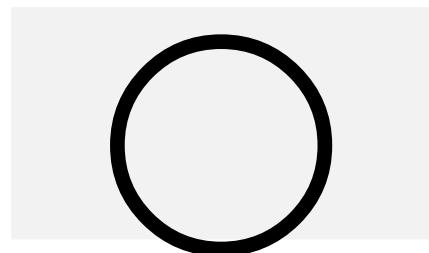
## 중대산업재해의 보호 대상

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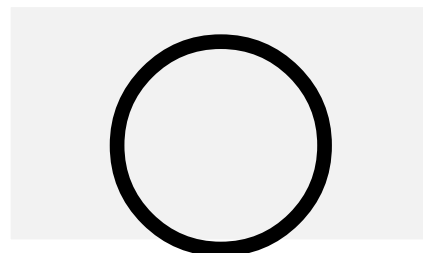
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의

**종사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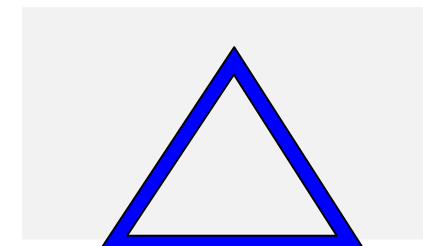
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



2 노무를 제공하는 자  
(ex-프리랜서)



3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 
근로자와 노무제공자

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인력공급업체에게 공급받은 인력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?

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,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보아야 한다

사건번호 : 대법 2021다255051, 선고일자 : 2021-11-11

【요지】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.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·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·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,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, 이를 근거로 선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.

## 3 보호대상: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?



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는 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면서 “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다.

※대검찰청-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 발췌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	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②노무제공자	③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
의무주체	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	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
보호대상	종사자	제3자의 종사자
의무규정	제4조 제1항 각호	제4조 제1항 각호
적용범위	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	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
적용방법	경영적 차원에서 지배·운영·관리 등 위험 제어 능력 범위 내 우선 적용	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·운영·관리 '책임'이 있는 경우에 한정 적용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실질적 지배 · 운영 · 관리 ‘책임’ 의 판단

고용노동부는 ‘도급인이 지배·관리하는 장소’의 의미와 관련하여, ‘지배·관리’란 “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·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·위험요인을 관리, 개선·제거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.”고 해석하고 있다.<sup>32)</sup> 구체적으로 위 지침은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

· 관리하는 장소로 볼 수 있고, 이와 달리 수급인 자신이 작업장소나 시설·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, 시설·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·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하는 경우 등은 도급인의 지배·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하고 있다.

※대검찰청-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 발췌

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실질적 지배 · 운영 · 관리 ‘책임’ 의 판단



‘실질적 지배 · 운영 · 관리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‘통제가능성’ 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

하여 최종적으로 ‘실질적 지배 · 운영 · 관리’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.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실질적 지배 · 운영 · 관리 ‘책임’ 의 판단



사업장 밖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 **수급인이 임의로 설치·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·관리 범주에 해당하므로 위 장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. 이와 달리**

**등은 도급인의 실질적인 지배·관리 영역 밖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 제5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.**

##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



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를 ‘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’, ‘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’라고 정의하면서 다른 제한적 요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, ‘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’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



##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



“중대시민재해”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

- ① 사망자가 1명 이상
-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
-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

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중대시민재해

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 
**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**하여

중대시민재해로 **사망자가 1명 이상** 발생한 경우



**1년 이상의 징역**  
또는  
**10억원 이하의 벌금**

- ※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**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**에서 **생산·제조·판매·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, 제조, 관리상의 결함**으로 인해 **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**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중대시민재해

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

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,

동일한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

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

→질병 종류 제한X

7년 이하의 징역  
또는  
1억원 이하의 벌금

처벌 대상: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행위자

## 대학교의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여부

### 〈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〉

4. “공중이용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「**교육시설**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**교육시설**은 제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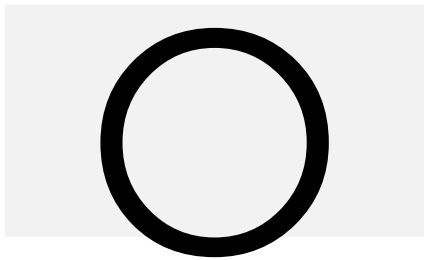
\*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,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등

대학교가 운영하는 도서관/급식실 등 **교육시설**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됨  
→ 단, **원료·제조물 & 공중교통수단**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는 **적용 ○**

## 대학교의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여부

1

원료 · 제조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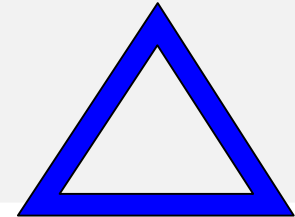
2

공중이용시설



3

공중교통수단

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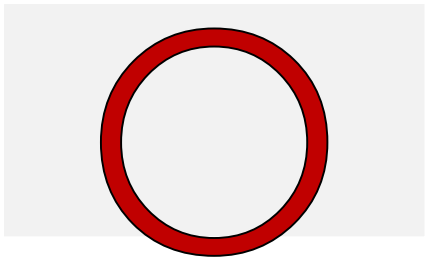
시행일: 2022. 1. 27

## 중대시민재해의 보호 대상

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**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** 사업에서 생산, 제조, 판매, 유통 중인 **원료나 제조물** 또는 **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** **공중이용시설** 또는 **공중교통시설수단의** **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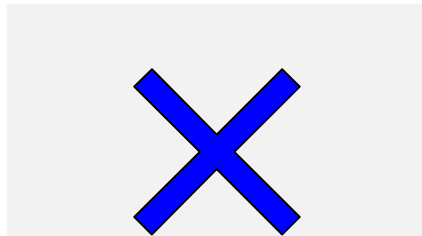
1

교내 급식을 이용하고  
식중독에 감염된 **학생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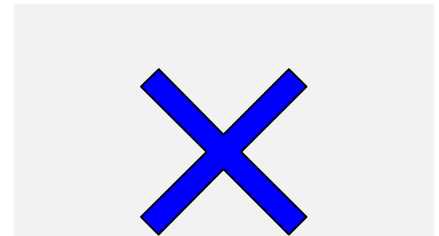
2

도서관 계단 결함으로  
사고를 당한 **학생**



3

교내 실습실의 결함으로  
화상을 입은 **학생**

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중대시민재해-교내 급식으로 식중독에 걸린 학생

### [대학통] 대학교 식당에서 식중독 걸렸다면...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

한국대학신문 | 승인 2022.02.18 08:20



한편, 공중이용시설인 병원, 어린이집 등의 **급식에서**

**10명 이상의 질병자 등이 초래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**

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??

※대검찰청-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 발췌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중대재해의 처벌 대상

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

**행위자**

↓  
사업주 또는  
법인의 경영책임자 등

### 1 경영책임자

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 
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

### 2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
① 각 사업의 대표자  
또는  
② 총괄 대표자

### 3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선임한 경우

최종 권한 및 의무를  
기준으로  
형사책임의 주체 판단

## 3

##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선임할 경우?



법인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점, 법 문언상 ‘또는’의 의미와 관련하여 양자택일의 의미가 아니라 양쪽 모두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서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, 법령에서 부과한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허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

※대검찰청-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 발췌

## 3

## 건설공사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??



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를 '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', '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'라고 정의하면서 다른 제한적 요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, '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'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

그 **행위자**를 벌하는 **외**에 **법인 또는 기관에게 벌금형 부과**

→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

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**사망자가 1명 이상** 발생한 경우

50억원 이하의 벌금

중대산업재해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**부상자가 2명 이상**  
중대시민재해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**부상자가 10명 이상**

10억원 이하의 벌금

중대산업재해로 1년 이내 직업성 **질병자가 3명 이상**  
중대시민재해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**질병자가 10명 이상**

※ 다만, **법인 또는 기관** 안전 및 보건업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**적용 제외**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

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**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**로  
**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**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

해당 **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**이 중대 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 
그 **손해액의 5배**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.

※ 다만, **법인 또는 기관**이 안전 및 보건업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 
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**적용 제외**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

해당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 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 
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.

### | 손해배상 총액 계산방법

{(적극적 손해 + 소극적손해) × (1 - 과실비율)}  
-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 등 + 위자료

##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

-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
- ②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
- ③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
- ④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
- ⑤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 · 횟수 등
- ⑥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
- ⑦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

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2항

##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예시

### 기초사실

-나이

-연봉

-노동능력상실율

-회사과실율 ( 1. \_\_\_\_ 2. \_\_\_\_ 3. \_\_\_\_ )

-1~3급인지(간병비)

-공단수령금액

Case]. 30세(일일 수익60%),  
연봉 3천,  
노동능력 50%상실(장해8급),  
사업주 과실율 30%,  
공단 수령금액 4천만원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▣ 일실수익 (호프만 계수)

- 5년 : 90%
- 10년 : 80%
- 15년 : 75%
- 20년 : 70%
- 30년 : 60%

## ▣ 노동능력상실률 / 국가배상 기준

-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-1급~3급 : 100%, | 4급 : 90%,  | 5급 : 80%,  | 6급 : 70%  |
| -7급 : 60%,     | 8급 : 50%,  | 9급 : 40%,  | 10급 : 30% |
| -11급 : 20%,    | 12급 : 15%, | 13급 : 10%, | 14급 : 5%  |

# 중대재해처벌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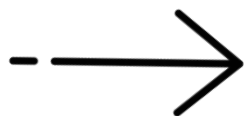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중대재해 발생 시 추가 이슈① – 대표이사(개인) 변호사 선임



중대 재해  
발생



1 형사처벌: 징역 또는 벌금

2 민사책임: 징벌적 손해배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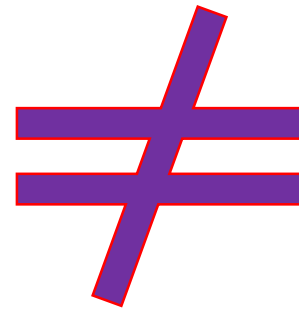
변호사 비용 발생

## 중대재해 발생 시 추가 이슈① - 대표이사(개인)의 변호사 선임

### 비교) 교비 회계로 총장의 변호사비를 지출한 사례

#### ✓ 무죄로 판단한 이유

- ① 민사소송 수임료 지출
- ② 소송의 당사자: 학교법인  
(교원의 개인적인 비위, 범칙에 관한 것이거나 교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이 아님)
- ③ 변호사비용은 학교법인이 지출해야하는 돈에 해당



중대재해처벌법의  
처벌대상



사업주  
또는 경영책임자  
(=소송의 당사자)

**산학협력단의  
중대재해처벌법상  
경영책임자?**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사립학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슈 – 산학협력단



고용노동부

수신 교육부장관(학교안전총괄과장)

2. 대학 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「산학협력단」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누구인지

○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,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학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대학과 산학협력단은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.

- 또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**사람이** **중대재해처벌법상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.** 끝. = **산학협력단장**

.....· **최근 중대재해 수사 경과** ·.....

## 22.1.29 (주)삼표 채석장 근로자 사망사건

### 양주 채석장 무너져 3명 사망... 삼표산업, 중대재해법 적용 1호

지난달 29일 채석장 발파중 붕괴... 마지막 실종자도 2일 숨진채 발견  
삼표산업 작년에도 2회 산재사망... 고용부 '중대재해법 적용사고' 판단  
현장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 속도... 경찰, 현장 발파 관계자 1명 입건



**경영책임자들의  
안전·보건 확보 의무**

# 중대재해처벌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 
**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**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**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**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 
**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**에 관한 조치
- ④ **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**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##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



**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**으로  
중대재해를 발생시킨

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



##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

2

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(법 제4조제1항제2호)

3

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(법 제4조제1항제3호)

4

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(법 제4조제1항제4호)

1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

2.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·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

3. 유해·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·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

4.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,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를 위한 조치

점검 반기  
1회 이상

2. 의무 이행 필요 조치  
4. 교육 실시 필요 조치

# 목표

## 1.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
# ①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- 안전 보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, **목표와 비전 제시**
- 목표 및 경영방침을 토대로 구체적인 **안전·보건 실행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할 것**

## □ 적용대상

### ◆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 모든 사업장

(50인 이상: 22.1.27부터 적용 / 50인 미만 및 개인사업주 24.1.27부터 적용)

## □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

- ◆ 점검 결과에 따라 미흡 사항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시
- ◆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업주 등에게 보고(피드백)

## □ 목표 설정 예시

- ▲ 경영방침 게시 건수(오프라인)
- ▲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근로자 인지율
- ▲ 안전보건 예산·인력 증감율
- ▲ 근로자의 위험요인·아차 사고 신고 건수
- ▲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건수
- ▲ 위험요인 발굴 건수
- ▲ 기계·설비의 정기 검사 실시율
- ▲ 안전작업절차서 도입·개선 건수
- ▲ 작업 허가제 등 도입·개선 건수
- ▲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행율
- ▲ '재해시나리오별 조치 계획' 수립 건수
- ▲ 비상조치계획 훈련 건수



# ①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안전 및 보건에 관한 **경영자 리더십**

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**경영자가 확고한 안전보건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고, 인력·시설·장비 등 자원을 제공**해야 합니다.

사례  
1

한국지엠(주) 부평공장

- ✓ 사내 모든 조직의 리더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위원회(SRB: Safety Review Board)
- ✓ 중점안전순찰(SOT : Safety Observation Tour), 안전대화순찰(SCT : Safety Conversation Tour)

사례  
2

(주)대웅제약

- ✓ 진급시험에 안전보건과목을 신설해 산업 재해에 대한 지식배양
- ✓ '부서 안전보건관리 평가제도'를 도입하여 무재해 목표 달성

사례  
3

한국공항공사

- ✓ 안전이 최우선, ESSG 경영 선포하여 안전중심경영을 표명
- ✓ 매월 안전관리실태보고제도를 운영하여 경영자에게 제출 및 실질적인 현장점검 유도

# ①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주요 실행 전략

- 01 안전보건목표와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을 널리 알리고,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합니다.
- 02 위험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를 위한 시설·장비 확충,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(인력·시설·장비)을 배정합니다.
- 0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, 구성원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합니다.

# 조직

2.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

## ② 안전·보건 업무 전담조직 설치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# 전담 조직

사업장 특성,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관리·감독하고, 컨트롤타워로서 안전·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**2인 이상의 조직**

### 설치 대상

-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**전문인력의 수가 3인 이상**으로
- ① 상시 근로자 수가 **500명 이상**이거나
  - ② 시공능력 순위가 **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**

### 유의 사항

전담 조직은 부서장을 포함하여 조직원 전체가 **전담 업무만 수행**  
**선임기준 및 전공의 제한은 없으나**, 고용노동부의 해석자료에 따르면  
**안전·보건 업무 수행 경험자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**

## 교육서비스업의 현업종사자 범위

▣ 초등·중등·**고등 교육기관**, 특수학교·외국인학교 및  
대안학교에서 **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**

- ① 학교 시설물 및 설비·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
- ②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
- ③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

## 교육서비스업의 현업종사자 판단 관련 행정해석

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포함하여 시설관리직, 청소원도 포함되는 것인지

회시번호 : 산재예방정책과-2417, 회시일자 : 2019-05-21

□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·위험의 정도,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1에서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(안전보건관리체제), 제3장(안전보건관리규정), 제31조(안전보건교육)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.

- 다만, 교육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급식, 환경미화, 시설관리 등 교육제공업무와 유해·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현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는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.

- 이 때,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학교급식종사자 뿐만 아니라, 교육제공업무와 유해·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(시설관리직, 청소원)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.

## ② 안전·보건 업무 전담조직 설치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# 전담 조직의 업무 내용 예시

※ 한국기술교육대학교-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발취

최고경영자

전담조직

안전보건관리책임자

안전보건주관부서장

- ▶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승인
- ▶ 경영 검토 승인 및 경영상의 지원
- ▶ 경영 검토에 대한 지시사항 전달

- ▶ 경영 검토의 시행
- ▶ 안전보건경영 체제의 이행 및 유지에 대한 총괄 책임
- ▶ 안전보건경영 체제의 이행과 관리에 필요한 수단 및 적절한 자원의 제공

- ▶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, 위험성평가 교육 및 결과에 대한 적합성 검토
- ▶ 안전보건 관련 내·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주관 및 관련정보 수집
- ▶ 위험성평가 계획의 수립, 부서별 평가결과에 대한 적합성 검토

## ② 안전·보건 업무 전담조직 설치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# 전담 조직의 업무 내용



‘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·관리’한다는 의미는 중대재해처벌법령,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·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이나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배치,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법령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총괄·관리하라는 의미이고, 사업장의 모든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 조직에서 직접 수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.

※대검찰청-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 발췌

# 확인

3. 유해·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, 점검 및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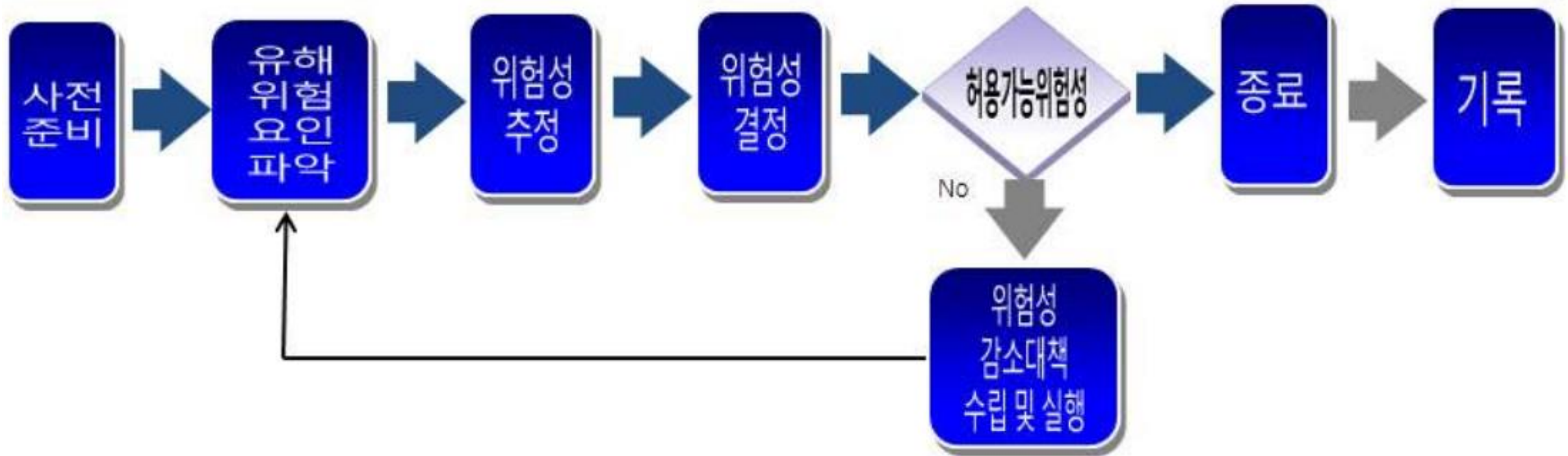
### ③유해·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위험성 평가

사업장 내 **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**하고  
해당 유해·위험 요인에 의한 **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**을 추정·결정하고  
**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**하는 일련의 과정



### ③ 유해·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주요 실행 전략

- 01 위험요인별 “발생가능성”과 “중대성”을 예측하여 위험성평가를 통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.
- 02 “제거 → 대체 → 통제 → 개인보호구” 순으로 위험요인별 제어방안을 검토합니다.
- 03 위험요인별 제거·대체 및 통제방안을 확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이행합니다.

### ③ 유해·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곱셈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

유해·위험요인	가능성	중대성	위험성

※ 가능성×중대성=위험성으로 추정

위험성 크기		허용 가능 여부	개선방법
1~3	매우 낮음	허용가능	필요에 따라 개선
4~6	낮음		
8	보통	허용불가능	계획적으로 개선
9~12	약간 높음		가급적 빨리 개선
15	높음		신속하게 개선
16~20	매우 높음		즉시 개선

〈가능성(예시)〉

구분	가능성	내 용
최상	4	화학물질(분진)의 노출수준이 100%초과
상	3	화학물질(분진)의 노출수준이 50%초과 ~ 100%이하
중	2	화학물질(분진)의 노출수준이 10%초과 ~ 50%이하
하	1	화학물질(분진)의 노출수준이 10%이하

〈중대성(예시)〉

구분	중대성	노 출 기 준	
		발생형태 : 분진	발생형태 : 증기
최대	4	0.01mg/m³이하	0.5ppm이하
대	3	0.01mg/m³초과 ~ 0.1mg/m³이하	0.5ppm초과 ~ 5ppm이하
중	2	0.1mg/m³초과 ~ 1mg/m³이하	5ppm초과 ~ 50ppm이하
소	1	1mg/m³초과 ~ 10mg/m³이하	50ppm초과 ~ 500ppm이하

# 예산

4.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와  
유해·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

## ④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·집행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**안전 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·시설·장비를 구비**하고, 이에 소요되는 **예산을 편성 및 집행**할 것

### □ 의무 이행

- ◆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계획에 따라 집행
- ◆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현업에 권한을 부여
- ◆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, 안전·보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
- ◆ 안전보건 예산을 사업장의 손익계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지침 운영(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 필요)

### □ 필요한 조치

- ◆ 점검결과에 따라 미흡사항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 지시 및 이행 사항에 관한 피드백

지침(매뉴얼, 절차서 등)	관련 문서
- 안전보건예산편성 지침	⊖ 안전·보건예산 계획 ⊖ 정기점검표 및 점검 보고서

# ④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·집행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안전 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·시설·장비의 구비

### 대상작업 파악

- 보호구 지급 대상  
유해 위험 작업 파악



### 보호구 선정 및 구입

- 작업에 따른 적절  
보호구 선정 및 구입



### 보호구 지급

- 보호구 지급 및 올  
바른 착용 방법 교육



### 서류보존

- 보호구지급 대장  
서류 기록보존  
(3년 보존 권장)

- 노출된 유해·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

## ④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·집행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Q

#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리스크 ?



1단계 인과관계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으로  
인하여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부실하게 이행될  
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큰 쟁점이자 과제가 될  
것으로 보인다.

# 지원

5.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

# ⑤ 안전·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,  
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 및 관리할 것

## □ 지침 수립 시 고려사항

- ◆ 관리책임자 등의 권한과 예산 부여에 대한 기준 마련
- ◆ 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충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
- ◆ 유해·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개선 조치할 수 있는 인력, 조직, 예산을 부여
- ◆ 관리책임자 등이 편성된 예산을 적절히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
- ◆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시간, 비용 등 권한과 예산을 부여 (겸직의 경우 일정한 안전보건활동시간 보장)

지침(매뉴얼, 절차서 등)	관련 문서
- 안전보건업무분장 지침	☐관리책임자 등 업무평가표 ☐정기점검표 및 점검 보고서

## →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련

첫 번째는 수급인(하수급인 포함)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(영별표3)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(영별표5)에 따라 각각의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

두 번째는 수급인(하수급인 포함)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도급인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합계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(영별표3)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(영별표5)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

- ※ 수급인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·보건관리대행 기관에서 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아 도급인은 수급인 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하고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수 있음

(안전보건지도과-72, 2008.04.18.)

## 2. 안전보건총괄(관리)책임자 등 안전보건업무 충실 이행

항 목	점검결과			개선사항
	양호	보통	불량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안전보건총괄책임자(도급 등 업무 시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급 등 업무의 위험성평가 실시</li> <li>-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도급사업 업무 총괄)</li> </ul> </li> </ul>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</li> <li>-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</li> <li>- 안전보건교육</li> <li>-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</li> </ul> </li> </ul>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관리감독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휘·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</li> <li>-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</li> <li>- 작업장 정리·정돈 등</li> </ul> </li> </ul>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안전관리자(위탁 시 안전관리 전문기관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장 순회점검, 지도 및 조치 건의, 적격품 선정</li> <li>-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·분석, 재발방지 보좌, 지도·조언 등</li> </ul> </li> </ul>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보건관리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장 순회점검, 지도 및 조치 건의, 적격품 선정</li> <li>-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·비치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 <li>-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·분석, 재발방지 보좌, 지도·조언 등</li> </ul> </li> </ul>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산업보건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, 전환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</li> <li>- 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등</li> </ul> </li> </ul>				

# 관리자

6.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

# ⑥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·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전문인력을 **법정 수 이상으로 배치**할 것

### □ 계획(지침) 수립 시 고려사항

- ◆ 안전관리자 등 **전문인력의 배치에 대한 기준**을 마련
- ◆ 배치 시 위험성, 규모 등을 고려하는 **배치 계획 수립**
- ◆ 전문인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
- ◆ 전문인력이 법령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 안전·보건업무수행시간을 보장제 -> 현업에서 예산 적기 운영관리)
- ◆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집행 관리
- ◆ 전문인력은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게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(**인사발령 시점 법정선임신고 준수**)

지침(매뉴얼, 절차서 등)	관련 문서
- 안전보건업무분장 지침	⊖ 전문인력 배치 현황 ⊖ 정기점검표 및 점검 보고서

## ⑥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·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전문인력을 **법정 수 이상으로 배치**할 것

안전보건관리 조직명	직 무
안전보건관리책임자	안전보건관리 업무 총괄관리
관리감독자	업무와 관련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
안전·보건관리자	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, 관리감독자에 지도·조언
산업보건의	근로자의 건강관리,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
산업안전보건위원회	안전·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

## ⑥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·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# ■ 한눈에 보는 교육서비스업의 안전관리자(전문인력) 등 배치기준

전문인력	역할	배치기준	비고
안전관리자	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 수행	현업근로자 50이상~1,000인 미만(1명), 1,000인 이상(2명)	전담자(300인 이상)가 아닌 경우, 연 585시간 이상 업무 수행 단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경우 100시간,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경우 200시간 추가
보건관리자	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 수행	현업근로자 50이상~5,000인 미만(1명), 5,000인 이상(2명)	
산업보건의	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	현업근로자 50이상(1명)	

# ⑥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·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교육서비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겸직 및 위탁 기준

Check List		YES	NO
배치 기준	<p>산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법상 고등교육기관(대학교)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는 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 업무 종사자로 한정됨.</p> <p>단, 용역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근로자도 대학교의 현업 종사자 기준 상시 근로자 수에 산입됨</p>	YES	NO
	<p><b>원칙</b></p> <p>(현업 종사자 수 기준) 50인 이상 1000인 미만: 1명 이상 선임</p>		
	<p>(현업 종사자 수 기준) 1000인 이상: 2명 이상 선임</p>		
	<p><b>위탁</b></p> <p>(현업 종사자 수 기준)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(장)의 경우,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</p>		
<p><b>겸직</b></p> <p>(현업 종사자 수 기준)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, 안전관리자에게 다른 업무(겸직)를 수행케 할 수 없음</p>			

**조리/청소/시설관리 등 현업 종사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을 유의할 것**

**안전관리자의 자격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4)**

▪안전관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**산업안전지도사 자격**을 가진 사람
- ② **산업안전산업기사** 또는 **건설안전산업기사**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③ **4년제 대학/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**
- ④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,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3년(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)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
(이 경우,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음)
- ⑤ 공업계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,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
(이 경우,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운수 및 창고업 등 법정 업종에서만 안전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음)
- ⑥ 고압가스안전관리법/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/도시가스사업법/교통안전법/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/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되는 안전관리책임자  
(단,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음)
- ⑦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(건설업 제외)에서 안전관련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
- ⑧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

시행일: 2022. 1. 27

# ⑥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·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교육서비스업의 **보건관리자** 선임과 겸직 및 위탁 기준

Check List		YES	NO
산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※ 산업안전보건법상 고등교육기관(대학교)의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는 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 업무 종사자로 한정됨. 단, 용역근로자의 수가 <u>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근로자도 대학교의 현업 종사자 기준 상시 근로자 수에 산입됨</u>		YES	NO
원칙	(현업 종사자 수 기준) 50인 이상 5000인 미만: 1명 이상 선임		
	(현업 종사자 수 기준) 5000인 이상: 2명 이상 선임		
위탁	(현업 종사자 수 기준)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(장)의 경우,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		
겸직	(현업 종사자 수 기준)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, 안전관리자에게 다른 업무(겸직)를 수행케 할 수 없음		

**조리/청소/시설관리 등 현업 종사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을 유의할 것**

## ⑥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·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# 보건관리자의 자격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별표6)

▪ 보건관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② 의료법에 따른 의사/간호사
- ③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④ 국가기술자격법상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⑤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
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함)

## ⑥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·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

고용노동부

###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

< '22.2.22.(화) 산업보건기준과 >

Q1

지방자치단체,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는지?

A: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(이하 '기특법') 제2조 제1호에서 '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'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지방자치단체,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기특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합니다.

# 청취

7.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, 청취 및  
개선방안 마련·이행 여부 점검

# ⑦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안전·보건에 관련하여 **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** 마련하고  
필요한 경우에는 **개선 방안을 마련·이행**할 것

## □ 지침 수립 시 고려사항

- ◆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**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견**을 듣는 절차를 마련(사내 제안제도 등)
- ◆ 의견 수렴 절차는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, 부서 단위의 회의 또는 간담회 등 다양하게 의견 수렴 可
- ◆ 산업안전보건위원회,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
- ◆ 의견 수렴 후 의견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 주는 **피드백 시스템**이 필요(우수 의견에 대한 포상 포함)
- ◆ 의견 개선 시 해당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

지침(매뉴얼, 절차서 등)	관련 문서
- 안전제안제도 운영 지침 - 안전보건협의체 등 운영 지침	⊖ 안전보건협의체 등 회의록 ⊖ 정기점검표 및 점검 보고서

## ⑦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# 주요 실행 전략

- 01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안전보건관련 참여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립니다.
- 02 산업안전보건위원회, TBM(Tool Box Meeting), 안전제안활동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.
- 0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.

# ⑦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종사자 참여 활성화

항 목	점검결과			개선사항
	양호	보통	불량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내부 절차 운영 기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익명 신고함 설치 상태</li> <li>- 내부 직원에 참여절차 안내</li> </ul> </li> </ul>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안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사자(도급·용역·위탁 포함)에 안내</li> <li>- 주기적 제안내용 확인 및 적절한 조치</li> </ul> </li> </ul>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차사고 발굴 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사자(도급·용역·위탁 포함)에 안내</li> <li>- 주기적 내용 확인 및 적절한 조치</li> </ul> </li> </ul>				

# ⑦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용

중대재해 처벌법	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2장 중대산업재해</b></p> <p><b>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                   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                   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                   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제1호·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b>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)</b> 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1~6.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7.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,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. 다만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·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·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.                      8~9.(생략)</p>

# ⑦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용



### 설치 기준

**현업 종사자의 수가  
100인 이상일 경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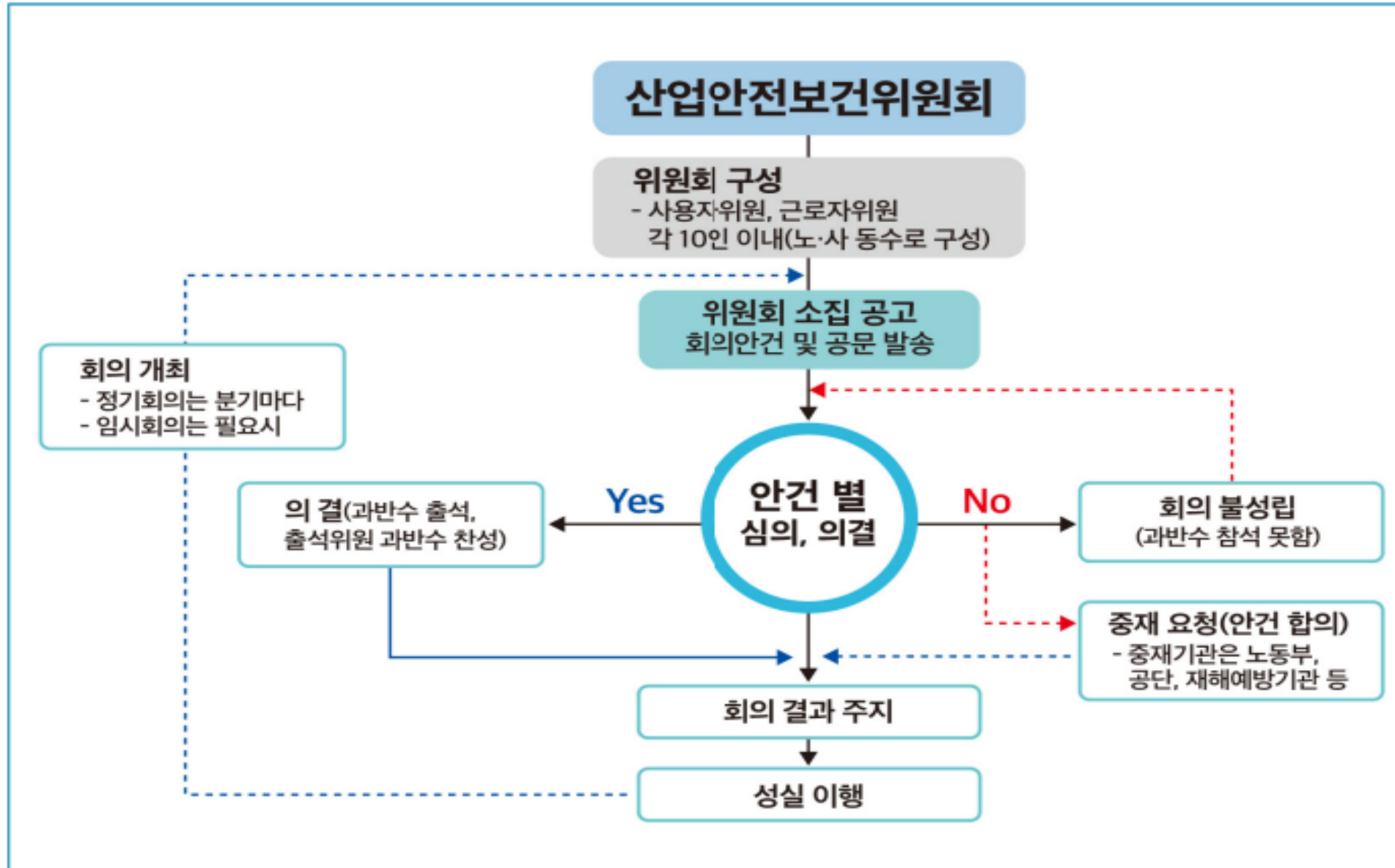
**노·사 동수로  
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**

산업안전보건위원회  
구성·운영 매뉴얼

- 공공행정, 초등·중등·고등 교육기관, 특수학교·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,
  - ‘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(시행령 별표 1)

# ⑦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

# ⑦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용한 종사자 의견청취 예시

의견수렴	산업안전보건위원회 (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)	개선조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산업안전보건위원회</li><li>• 의견청취함 (홈페이지, 소원수리함)</li><li>• 안전보건교육</li></ul>	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</li></ul>	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안전조치</li>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(100L) 근골격계에 부담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산업안전보건위원회(또는 안전 관련회의)에서 반영 여부 검토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</li></ul>

# ⑦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대학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'근로자위원' 선임 유의사항

2-11

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해야 하는지

### A 회 시

-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(대학교)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'청소, 시설관리,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사자 수'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·운영 여부를 판단함
-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은 상기 현업업무 종사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교수, 학생,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보여짐

# ⑦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의견청취제도 운영 사례

사례  
1

한국지엠(주) 부평공장

- ✓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직영 + 협력사 사용자 확대 및 신고·제안 기능
- ✓ 임직원 대상의 안전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

사례  
2

(주)만도 원주공장

- ✓ 'BAND'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하기 쉬운 안전신문고 운영

사례  
3

한국공항공사

- ✓ 근로자의 전사적 참여를 통한 'KAC 안전 우수사례(BP) 경진대회'
- ✓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'KAC 안전신문고'

# 메뉴얼

8.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 
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

## ⑧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**대응조치/ 구호조치/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**하고 시행여부를 점검하는 것

### □ 계획(지침) 수립 시 고려사항

- ◆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
- ◆ 매뉴얼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  1. 비상연락체계(사내, 외부 유관기관) 및 경보 전파방법
  2. 작업중지, 근로자 대피,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
  3. 종사자 작업중지권, 관리감독자 작업중지권
  4.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 금지
  5.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
  6. 상황에 따른 모의훈련 시나리오

### □ 의무 이행(사업 또는 사업장)

- ◆ 상황에 따른 대응절차를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(반기 1회 이상 훈련 실시 권장)
- ◆ 작업장 등에 비상 시 대피요령, 비상연락망 등 정보의 게시

## ⑧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# 주요 실행 전략

- 01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'시나리오'를 작성합니다.
- 02 '재해발생 시나리오'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, 상황보고·전파(내·외부), 임시적인 위험요인 제거방안, 근로자 대피방안, 추가피해 방지방안 등을 포함합니다.
- 03 비상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검증하며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.

●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시 대응 절차도



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(사업주의 작업중지)  
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

**●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요령**

**감전** : 즉시 전원 차단, 통전 차단 확인  
**질식** : 작업 중지,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
**화재** :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,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
**무너짐** : 해당 공중의 기계장비 정지, 2차 피해 발생 방지  
**기계재해** :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 
**유해물질 누출** : 가까운 밸브 차단, 신속한 대피, 호흡기 등 보호  
**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** :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

**※ 중앙행정기관**  
**-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발취**

# 용역

9. 도급, 용역, 위탁 시 평가기준·절차 및 관리비용,  
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·이행 여부 점검

# ㉔ 적격 수급업체 평가·선정기준 마련 및 점검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 
종사자의 안전·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**적격 수급업체 평가·선정기준을 마련하고**  
**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**

## □ 지침 수립 시 고려사항

- ◆ 수급인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
  1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(적격수급업체 선정기준)
  2.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
  3.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(건설업, 조선업에서 적정 공사·건조기간 산정 절차)
- ◆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활동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매년 수급인 등록(재등록), 발주에 반영

지침(매뉴얼, 절차서 등)	관련 문서
- 도급사업안전보건 지침 - 적격 수급인 관리 지침	⊖수급인 안전 및 보건활동 평가표 ⊖정기점검표 및 점검 보고서

## ㉔ 적격 수급업체 평가·선정기준 마련 및 점검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# 주요 실행 전략

- 01 도급·용역·위탁 등 계약을 할 때에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고, 수급업체에게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합니다.
- 0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운영 시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, 파견업체, 공급·판매업체 등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

##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



※ 중앙행정기관

-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발췌

### Q7. 법 제5조 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발주도 포함되는지?

-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·관리·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
  - 따라서

## ㉔ 적격 수급업체 평가·선정기준 마련 및 점검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# 선정된 적격 수급업체와의 도급·용역 등 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

- 1 **안전보건교육:** 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적극 협조
- 2 **위험성평가:**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결과 제공 및 수급업체의 위험성 평가 실시 지원
- 3 **안전보건협의체 구성·운영:**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1회 이상 협의
- 4 **안전보건 점검:** 도급업체 사업주·근로자와 수급업체 사업주·근로자의 사업장 정기점검 실시
- 5 **안전보건 정보 제공:** 수급업체에게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 안전보건정보를 제공

## ㉔ 적격 수급업체 평가·선정기준 마련 및 점검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# 선정된 적격 수급업체와의 도급·용역 등 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

6

**공사기간 등 준수:**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준수  
(단,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공법변경, 설계보강 등은 가능)

7

**작업환경:** 수급업체에게 위생시설 제공 또는 사용 허용

8

**안전보건 조치 이행:**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준수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심의·의결사항 준수

9

**산업재해 현황 제출:** 도급업체의 “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” 작성 시  
수급업체의 자료제출 등 적극 협조 의무



#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자율점검표

##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자율점검표

※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(1.1부터 6.30.까지)와 하반기(7.1.부터 12.31.까지)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

### ■ 경영책임자 안전·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항목 <항목별 해당사항 √ 체크>

반기별 점검 · 평가 항목	예	아니오
① 유해 ·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		
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 · 관리		
③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· 이행 여부		
④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		
⑤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, 용역, 위탁 기준 · 절차 이행 여부		
⑥ 안전 ·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		
⑦ 안전 ·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		

**중대재해처벌법  
대응 방향**

#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향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Step 1. 계획 수립

- ▶ 유해·위험한 기계, 기구, 설비 파악
- ▶ 유해 인자 등 유해 위험물질 파악
- ▶ 관련 지침 제정 및 계획 수립
- ▶ 자가진단 정기 점검표 작성

## Step 4. 필요 조치 지시

- ▶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 개선조치 지시
- ▶ 전담 조직의 개선조치 구체화 및 이행
- ▶ 지시사항 이행 결과에 따른 피드백
- ▶ 내부 심사 및 경영자 검토를 통한 지속적 개선

## Step 2. 의무사항 이행

- ▶ 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이행
- ▶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 준수
- ▶ 재해예방활동 실시 및 사업주의 참여

## Step 3. 이행사항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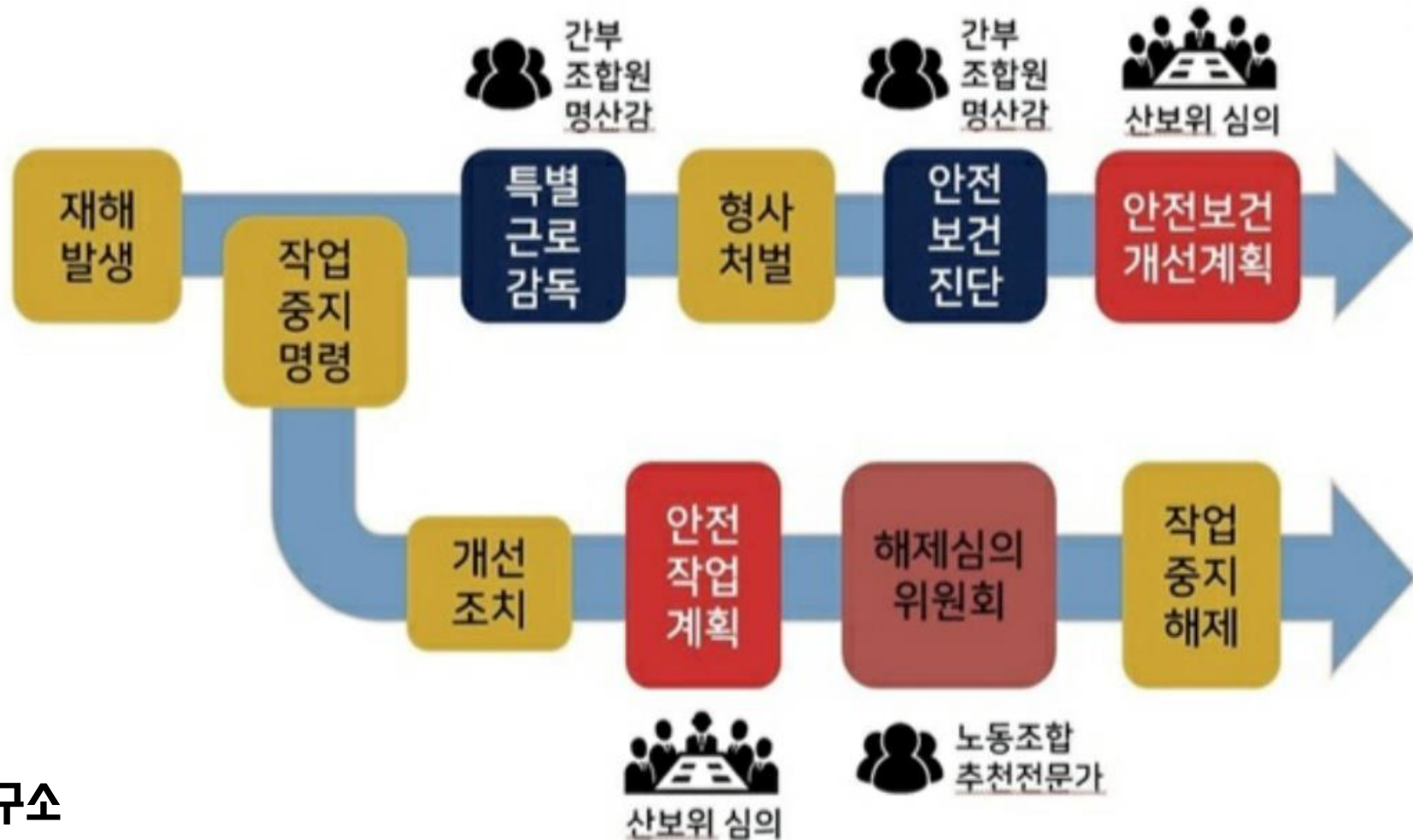
- ▶ 전담 조직의 사업장 정기·수시 점검
- ▶ 부서별 안전·보건 자가 점검표 작성
- ▶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

#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중대재해 발생시 전체 프로세스



출처

-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

#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

열린 노무법인 Always with you

시행일: 2022. 1. 27

## 1. 경찰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

- 정확한 사고 날짜, 시각, 장소
  -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경위
  - 현장보존이 되고 현장 훼손이 막아졌는지
  - 증거확보가 되었는지(CCTV 등)
  - 현장조사 일정(유족 참여를 강력히 요구)
  - 목격자가 있는지
  - 관련자에 관한 수사일정
- ※ 관련자: 목격자, 상급자, 동료 등

## 2. 노동청에 확인해야 할 사항

- <작업중지명령>이 내려진 시각, 중지범위
  - 현장조사 일정(경찰과 별도로 할 수 있음), (유족 참여를 강력히 요구할 것)
  - 노동청이 파악한 사고 원인
  -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 되는지
- ※ 사망사고는 노동부장관이 <작업중지 명령>을 내림(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)

## 3. 사업주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

-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사고 경위, 사고 원인, 목격자, 증거
- 경찰, 노동청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지
- 작업중지명령을 준수하여 현장보존이 되고 있는지
-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기록 (로그 기록, 설비, 전기 등)
- 회사의 업무지시 사항 : 종이문서, 전자문서, 이메일, 문자, 통화내역, 통화녹음, 메신저 (카카오톡, 텔레그램 등)
- 사업장 내 과거사고 기록
- 기타 : 물질안전보건자료(화학사고 등), 안전교육 관련 기록, 작업환경측정 결과,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, 건강검진 기록 등

## 4. 동료를 통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

- 목격자나 동료의 진술 듣기(녹음)
  - 목격자, 노동조합이 촬영한 사진, 동영상
  - 회사의 태도(협조적인지 아닌지)
- ※ 목격자나 동료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

**중대재해 발생 시  
각 기관에 대한 확인 사항**



열린노무법인

CEO

장 재 훈

성균관대 경영/연세대 경제학 碩士  
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
대전고등법원 조정위원  
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 
업무상질병판정위원 역임  
direct contact : 010-8253-8552

본 사 : 0672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, 213호  
지 사 : 3110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 8길 6, 202-1호  
김수일 노무사 : 010-8033-8552  
정혜진 노무사 : 010-8449-8552  
E-mail : labor1002@daum.net

감사합니다.

